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8일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아동수당 금액 상향 조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그 외, 개정안에서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아닌 수급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병도의원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수급아동 본인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아동수당의 수혜자는 아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수급아동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아동수당을 18세 이상까지 지급하거나 직업훈련 등으로 지급이 연장되는 국가 중 체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은,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